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김 선 남*, 이 환 수**

요약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는 산업 발전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한 우려 또한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범위를 규정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안)'은 산업 진흥에 목적을 두고 있어, 기존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보주체의 인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결국 개인정보위원회는 최근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 '가이드라인(안)'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주제어: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the Big Data Guideline in Korea

Sunnam Kim, Hwansoo Lee

Abstract

The age of big data has not only opened new opportunities for economic growth in various industries, but it has also created new problem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privacy invasion. Given this situation, Korea's communications commission has proposed a big data guideline that specifies how companies should collect and utilize personal information in the big data environment. However, this guideline is more focused on industrial development th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it contains many features that conflict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s it currently exists. As a result, civic groups strongly oppose the guideline, as it may create serious privacy issues for subjects of information gathering. Thus, this paper analyses the limitations of the guideline by comparing it with domestic and foreign laws abou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privacy. We also discuss the direction of legaliz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with respect to the secure use of big data.

Keywords: big dat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guidelin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right

2014년 8월 7일 접수, 2014년 8월 8일 심사, 2014년 10월 14일 게재확정

* 단국대학교 IT법학 협동과정 석사과정(blackksn@hanmail.net)

**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IT법학 협동과정 연구전담 조교수(hanslee992@gmail.com)

I. 서론

빅데이터의 개념은 연구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최근에는 데이터 유형에 관한 논의를 포함시켜 정의하고 있는 추세로, 기준의 방법이나 도구로 수집, 저장, 검색, 분석, 시각화 등이 어려운 다양한 유형의 대용량 데이터로 정의할 수 있다(최규현, 2012). 최근 빅데이터가 주목받게 된 배경은 데이터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들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기기의 스마트화 및 서비스의 소셜화는 사용자 및 기계들이 생성하는 데이터의 종류와 양을 폭증시켰고, 과거에는 생성 데이터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거나 단순히 저장만 해오던 기업들은 축적 데이터의 양질전환이 필요한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었다(Manyika, et al., 2012).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과거에 저장하지 않던 데이터 또는 축적해온 데이터를 통해서 누가 먼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사업에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경쟁 포인트가 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 등장한 Hadoop과 Nosql 등은 빅데이터 처리에 대한 기업의 니즈를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한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또한, 여러 산업에서 예측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이러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즉, 사용자 생성 데이터의 증가와 함께 기업의 비즈니스 니즈, 그리고 관련 기술의 성숙 등이 어우러지면서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IT 트렌드가 형성된 것이다(박대하 외, 2011).

그러나 빅데이터를 통해 파생되는 새로운 기회가 내포하는 위험 또한 간과할 수 없다(문혜정 외, 2012). 빅데이터 관련 기술의 발전은 기업들이 보다 많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저장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민감하지 않거나 개인에 대해 식별 불가능한 정보들을 조합·분석·가공하여 민감하거나 식별 가능하게 만들 수 있게 했다(성준호, 2013). 과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범주 내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 프라이버시 침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

로 논의되어 왔으나, 빅데이터 관련 기술의 발전과 이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활용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의 재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쿠키 정보나 구매정보를 통해 개인의 신분이나 성향을 분석하여 마케팅에 활용한다거나, 온라인에 작성한 글이나 SNS 상의 인맥 관계를 통해 개인의 신념 또는 정치적 성향 등을 분석하는 행위는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김재광, 2012).

이러한 빅데이터가 가지는 양면성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12월 18일에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였는데, 12조항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안)」은 공개된 개인정보 또는 이용내역정보를 수집, 조합, 분석, 처리 및 관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주로 담고 있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안)」 내의 공개된 개인정보의 범위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조항들이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무력화시키거나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14년 7월 30일 “빅데이터 활용의 유용성과 관련 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처리 기준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안)」은 법률 체계상 수용되기 어렵다”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2014년 11월 20일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4차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비식별화 조치가 취해진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동의 의무를 생략하고 기업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비식별화 과정에

서 원본 데이터가 기업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먼저 처리되어야 하고 이후 활용 과정에서 재식별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취지로 이용자에게 알 권리와 수집 거부 권리 등을 부분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이의 구체적인 구현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공개한 ‘가이드라인(안)’이 가지고 있는 쟁점들은 결국 비중립적 상황에 놓여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산업 발전과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가지 이질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고민의 결과로 보인다. 또한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안)’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와 위험성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이 공익성이나 국가 차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빅데이터 관련 ‘가이드라인(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관점에서 공개된 개인정보와 분석 기술을 통해 생성된 파생정보의 처리 및 활용에 대한 논의를 보다 중립적이고 거시적 시각에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빅데이터 개념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이용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쟁점들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해외의 관련 법제 동향을 참조하여 빅데이터 시대에 우리나라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안)’이 가지는 한계점을 논의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현실적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Ⅱ. 빅데이터 관련 국내 법률 현황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국내 빅데이터 기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현재의 시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각각의 개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정준현, 2014).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법률 또는 국제규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다(정찬모 외, 2009). 예컨대, 시행령, 규칙, 고시까지 지켜야 할 것들이 30개가 넘을 정도로 복잡하고, 법률 간 개인정보에 관한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산업체에서는 자신의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기술이나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현실이다(길준규, 2012). 또한 기업들은 여러 산업들을 융합하여 새로운 기술력을 통해 가치창출을 생산하고 있지만 <표 1>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들은 소관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관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항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1970년대부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을 발전시킨 외국과는 달리 개별법을 통하여 분야별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개별법으로 규제하는 법체계에서 2011년 3월 29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기존의 개별법과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조항이 다수 남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반면 기존의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정보주체에게 고지사항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5호에서는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

〈표 1〉 주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 분류 | 관련분야 | 법률명 | 소관부처 |
|-----|----------|--|----------------|
| 일반법 | - | - 개인정보보호법 | 안전행정부 |
| | 공공부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법 - 주민등록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안전행정부 |
| | | - 국가보안업무규정 | 국가정보원 |
| 개별법 | 정보통신분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치정보보호법 | 방송통신위원회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비밀보호법 |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안전행정부 법무부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사업법 | 방송통신위원회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보화기본법 | 안전행정부 |
| | 상거래 분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거래기본법 | 산업통상자원부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서명법 | 안전행정부 |
| | 금융·신용 분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 보험업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 |
| | 보건·의료 분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 약사법 - 국민건강정보법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 보건복지부 |

출처: 이창범(2012)

을 수 없거나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목적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2항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하여 목적의 범위 이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개별법 「위치정보보호법」과 일반법 「개인정보보호법」 사이에서도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면서

식별할 수 없는 정보주체 즉,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외하고 있다. 반면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는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규정한다. 내용 중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의 경우 특정인의 소유물일 때는 물건의 위치에 따라 특정인의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내용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부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이다. 하지만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닌 무주물인 경우 「위치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지만 정보보호 차원에서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까지 수집·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즉 특정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식별하지 않고 그 위치를 추적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상으로는 개인정보취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위치정보보호법」은 그러한 위치추적에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반법 「개인정보보호법」과 개별법 사이에서 여러 모순·충돌이 발생하여 기존의 일반법의 부재로부터 각각 제정되어 온 개별법 관계에서 일관적인 기준과 중복 규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지기 시작하였다.

2.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안)의 등장과 논란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 상황에서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여러 제약조건이 존재하여 이의 완화를 목적으로 2013년 12월 1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본 ‘가이드라인(안)’은 빅데이터 환경에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등을 보호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는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규정과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여러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지난 2014년 7월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민단체의 진정(2013.12,

2014.07)에 대한 결정(2014 의결 제16호)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하였다. 현 ‘가이드라인(안)’이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훼손할 우려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안)’의 문제점은 크게 공개된 개인정보, 이용내역정보, 파생 정보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안)’의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안)’ 제5조, 제10조, 제11조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분석, 이용, 제3자에게 제공할 시에도 정보주체의 동의가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따를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정보주체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안)’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공개를 근거로 정보처리자의 수집 및 이용 등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과연 정보주체의 공개 여부가 정보처리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허락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용내역정보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안)’ 제4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조합, 분석, 또는 처리를 목적으로 이용내역을 수집하는 경우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개인정보는 정보의 내용을 제한하지 않고 개인의 식별 가능성

〈표 2〉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안)과 기존 법률의 충돌

| 조항 | 주요내용 | 충돌 조항 | | | 쟁점 |
|---------------------------------------|--|--|--|---|--|
| |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위치정보보호법 | |
| 정의 (제2조) | [제1항] ‘ <u>공개된 개인정보</u> ’란 정보주체 및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제한 없이 일반 공중에 공개된 부호·문자·음성·음향 등의 정보로서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제2조 (정의) | - | - | ‘ <u>공개된 개인정보</u> ’의 정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의 「개인정보」 정의와 충돌하며 개인 자신이 정보를 공개하였더라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일 뿐 자신의 권리 포기는 아니다. |
|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 (제3조) | [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u>공개된 개인정보</u> 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도 된다. |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 제15조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등 |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의 동의 과정을 생략하는 행위는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의 법제를 무력화시킨다. |
| 이용내역 정보의 수집 (제4조) | [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조합, 분석, 또는 처리를 목적으로 이용내역을 수집하는 경우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도 된다. |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17조 (개인 정보의 제공) 등 | 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제24조의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 제18조 (개인위치 정보의 수집) 제19조 (개인위치정보 의 이용 또는 제공) 등 | 포털사이트에서 사용한 위치정보, 검색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에게 민감하고도 내밀한 사생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이를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수집을 못하는 (Opt-out) 행위는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의 원칙인 사전동의(Opt-in)에 위반한다. |
| 새로운 개인정보의 생성 (제5조) | [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조합·분석·처리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개인정보 및 이용내역정보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개인정보를 생성하는 경우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도 된다. |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 | 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등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 경우 개인정보의 생성 또한 개인정보의 처리로 정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
| 공개된 개인정보 등의 이용 (제10조) | [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공개된 개인정보 등을 정보주체의 별도의 없이 자신의 서비스 제공업무 수행을 위해 내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정보주체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 | 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등 | 제19조 (개인위치 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등 |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정보통신망법」 제24조, 「위치정보보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어긋난다. |
| 공개된 개인정보 등의 제3자 제공 (제11조) | [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공개된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알리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u>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u> . [제11조 제1항] |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등 | 제24조의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 - | 제3자에게 ‘ <u>공개된 개인정보</u> ’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 반하여 이와 관련 피해 발생 시 책임의 소재와 그 부담을 개인에게 부담 지우게 된다. |

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행태에 관한 정보이건, 특정 개인을 평가한 정보이건 식별성 또는 식별 가능성성이 존재한다면 모두 개인정보로 본다(문재완, 201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용내역정보는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제한 없이 수집 허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될 소지가 크다.

또한 현재의 「가이드라인(안)」은 공개된 개인정보와 이용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개인정보가 생성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처리자의 노력에 의해 창출된 2차적 정보 즉, 파생정보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생성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파생정보의 식별성 또는 민감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활용을 허용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인권이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정보처리자의 노력을 통해 생성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의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로 해석할 경우에,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다면 수집 출처, 처리 목적,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 등의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음에도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이외에도 현행 「가이드라인(안)」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3.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안)의 주요 쟁점

1) 공개된 개인정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현법재판소, 2011현마63·468).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기존

에 논의된 정보기본권들과 중복되기도 하지만 다소 차이가 있다. 큰 차이점은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스스로 사생활을 보호하는 확장된 프라이버시 개념이며, 개개인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의미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지 않더라도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현법재판소, 2003현마425).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범위 내에 있다(현법재판소, 99현마513; 2003현마425).

이러한 법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안)」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대부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공개된 개인정보는 수집, 이용, 제3자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 과정을 생략하고 있다. 이는 「공개」의 의미를 정보처리자에게 유리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인데 「공개」를 정보주체가 정보 수집 및 활용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더라도 빅데이터 환경의 특성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겠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동의 과정의 생략은 개인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성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잃게 되는 것이다.

정보주체의 관점에서 「공개」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포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개된 개인정보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의 범위 내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하며 목적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제17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고지 원칙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때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호),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제2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시간(제3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제4호)”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안)’의 경우에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조항을 대부분 무시하고 있다.

2) 이용내역정보

이용내역정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발생되는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거래기록 등의 정보로서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이용내역정보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및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안)’ 제4조를 통하여 현행법의 해석·적용상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이용내역정보 법적 쟁점은 ‘가이드라인(안)’ 제4조 제1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조합, 분석, 또는 처리를 목적으로 이용내역을 수집하는 경우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도록 제정한 이유는 이용내역정보가 발생되는 시점마다 동의를 받기 어렵고, 정보통신서비스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정보주체가 수집을 예측하기 때문에 Opt-out 방식을 적용하였다.

다만, 이용내역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

주체가 이용내역정보의 수집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용내역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하지만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이 곤란하더라도 이용내역정보에서 정보주체에게 민감하거나, 식별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보호가 필요하다.

두 번째, ‘가이드라인(안)’ 제4조 제2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이용내역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수집, 조합, 분석 또는 처리되는 사실 및 목적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표시 방법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의 제정이유는 이용내역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음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제도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자적 표시 방법을 통해 내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용 현황이 아닌 포괄적인 내용이나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그대로 보내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기업의 정보 이용에 대한 정확한 관리시스템과 체계가 필요하다.

3) 파생정보

현재는 다양한 영역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 수집 및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사회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정부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응용하고 있다(유근환 외, 2013). 특히 상상을 초월 할 정도로 발달하는 데이터 처리 능력 및 데이터 분석 기술, 데이터베이스 통합 및 조합·가공 기술은 실생활에 유용한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용이하다(이창범, 2013).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하여 생성된 정보는 온라인상 공개된 정보들과 재가공을 통하여 정보주체가 제공한 정보가 아닌, 기존의 정보에 기초한 새로운 파생정보를 생성하였다. <표 3>을 통하여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데이터의 유형 및 파생정

〈표 3〉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분류

|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분류 | | | |
|--------------------|---------|---|--|
| 데이터의 유형 | | 하위유형과 실례 | |
| 정태정보 | 아이덴티티 | 오프라인 | 생체정보 • 지문, 홍채, 인증키 등 |
| | | | 경제정보 • 계좌 및 신용카드 번호 등 |
| | | | 사회적 정보 • 종교, 동호회 등 |
| | | | 관계적 정보 • 자녀, 부모, 배우자 • 자녀에 대한 정보 |
| | | | 부동산 관련 정보 • 집, 직장 주소 등 |
| | 온라인 | 디지털 아이덴티티 | • 각종 계명, 이메일 주소 사용자명, IP주소 |
| 동태정보 | 동시적 데이터 | 낮은수준 | • 거래내역, 여행기록, 통화내역 등 |
| | | 높은수준 | • 빅데이터 환경에서 수집된 로그 데이터(시간, 장소) |
| | 실시간 데이터 | • 빅데이터 환경에서 수집된 실시간 데이터 | |
| 파생정보 | 분석데이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흐름에 따라 수집되고 분석한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데이터 : 매달 잔고의 흐름 - 새로운 제안에 대한 응대 패턴 : 경험 근무 - 사회적 행동 : 약물 사용, 위법사항, 가족 특성 등 - 취향 : 소비패턴 · 계층에 따른 아이템으로 분류 가능(구매설득) | |
| | 통합데이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데이터와 결합된 개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NA분석 : 정신질환을 포함한 유전질병 발병 가능성 - 다자간 연계 데이터 : MAC 어드바이스를 제공하는 기기들의 위치로 현재 위치 및 활동시간을 추정 | |

출처: 신덕호(2009)

보의 분석데이터와 통합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다.

파생정보의 문제점은 첫 번째로 우리나라 법제에 있어 파생정보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범위이다. 특히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개인의 사상과 신념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같이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분석해 낼 수 있다(김승한, 2013).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빅데이터 기술을 통하여 생성하여 정보주체의 민감한 자료를 생성한다면 그 파생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범위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두 번째로는 파생정보 분석데이터로서 온라인상에 공개된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서 작성된 개인적인 견해와 빅데이터 분석으로 생성된 동의 없는 결합이다. 즉 SNS상에 올린 파생정보는 타인과 관계 형성 및 공동체에서 동질감과 신뢰감을 주기 위한 전제로 자신에 대한 정보(일상정보 등)를 공개한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길 원해서 정보를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이규철, 2013).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활용한다면 “개인정보 수집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정보를 점유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것인지?”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자

의 지위에 있다면 기존 개인정보보호 법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들을 모두 지켜야 하는 것인가에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온라인상 공개된 정보와 파생정보의 분석 및 활용에서 헌법적 정당성이 결여된다. 현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의 근거조문은 헌법상 일반적인 법률유보 조항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이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를 통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이 법적 근거를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제한이 ‘비례성원칙’과 ‘규범확정성원칙’ 및 ‘목적구속원칙’을 준수해야만 기본권제한이 헌법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III. 해외 입법 동향

1. EU

2012년 1월 25일 유럽의회에서는 1995년 지침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규정(안)’(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을 공표하였다. 기존의 지침(General Data Protection Directive)은 소셜네트워크,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관련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European Commission, 2012). 2012년 ‘GDPR’은 1995년 지침에 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국외 이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에 대응할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동시에 제시함으로서 빅데이터의 활용과 사생활 보호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고자 하였다(이창범, 2013; 함인선, 2012). 기업들의 개인정보 활용 편의성을 위해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는

〈표 4〉 ‘GDPR’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조항 |
|------------|---|--------------|
| 범위와 원칙 | 개인정보 범위 온라인 식별자와 위치정보 등을 포함 | 제4조 |
| | 처리 원칙 투명성 원칙 추가 | 제5조 |
| | 수집 원칙 정보수집 최소화원칙 강조 | 제5조 |
| 정보 처리자의 의무 | 동의의 방법 “명시적인(explicit)” 동의 방법 요구 | 제4조 |
| | 동의의 조건 동의 입증 책임 부여 | 제7조 |
| | 처리방침 공개 명확하고 알기 쉬운 형태로 공개 | 제11조 |
| | 고지 의무 보관기간, 개인정보처리자 및 책임자, 제3국 이전 의도 등에 대해 고지 | 제14조 |
| | 정보보호 우선 고려 제품이나 서비스 설계 시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 | 제23조 |
| | 침해 사실 통보 정보주체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주체에게도 통지 | 제31조 제32조 |
| | | |
| 정보 주체의 권리 | 정정권 부정확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요구권 | 제16조 |
| | 잊혀질 권리와 삭제권 정보주체의 처리 철회 요청이나 더 이상 불필요할 경우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 제17조 |
| | 정보 이동권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공 및 이전 가능 | 제18조 |
| | 거부권 정보주체의 사유로 개인정보의 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제19조 |
| | 프로파일링 거부권 정보주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파일링에 대한 거부권 | 제20조 |

내용과 함께 기업과 개인 간에 있어서는 기업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고은별 외, 2012).

1) 개인정보의 범위와 처리 원칙

‘GDPR’은 개인정보를 정의함에 있어 그 범위를 확대 하였다. 기존에는 신체적·생리적·유전적·정신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정체성으로 개인정보의 범위를 설정하였으나, 개인 식별정보, 위치 정보, 온라인 식별정보 또한 개인정보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개정안에서도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제4조의 개인정보의 범위, 제5조의 개인정보 처리 원칙 등을 통해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EU의 입장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제4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와 관련된 모든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제5조 (a)호에서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와 관련하여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방법으로 처리되어야한다.”, (b)호에서는 “개인정보는 특정하고, 명확하며,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수집되어야하며 이러한 목적과 양립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였다. 이를 개인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해석해보면 공개된 개인정보라도 개인정보 자체의 속성을 잃는다고는 보기 어렵고, 정보처리자의 수집 합법성과 공정성이 정보주체의 공개로 인해 충족되었다고 보더라도 처리과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공개 목적이 정보처리자의 수집 목적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가 수집을 무조건적으로 정당화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정보처리자의 의무

‘GDPR’의 제4조 제8호에서는 ‘명시적인(Explicit)’ 방법으로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에서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을 포함한 모든 처리 행위의 목적에 대한 정보주체로부터의 동의를 입증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투명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침을 공개하여야 하고, 처리와 관련된 정보를 명확하고 분명한 언어로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여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제14조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자(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쉬운 언어로 정보주체에게 적합하게 정보의 처리과정을 통지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와 관련된 개인정보가 수집되면, 관리자는 관리자의 신원 및 연락처 등 일정한 사항을 그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로부터 수집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그 개인정보의 출처를 알려야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함인선, 2012). 즉,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 과정을 정보주체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고 수집 시점에 수집 여부와 수집 출처에 대해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3) 정보주체의 권리

‘GDPR’ 제4조 제2항에서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정보주체와 관련된 모든 정보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제2조 제1항의 물적 범위(Material Scope)에 있어서는 “자동화된 수단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파일링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구성할 의도인 개인정보의 자동화 이외의 수단에 의한 처리에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파일링시스템이란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접근 가능한 개인 정보의 집합체를 의미하는데 개인정보의 개념에 의거해서도 이용내역정보와 생성된 개인정보 모두 개인정보의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파일링시스템의 관점에서도 정보주체는 이용내역정보와 생성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파생정보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연장선상에서 이를 보호해야하고 적법하게 처리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이용내역정보와 파생정보가 독립적으로는 식별성과 식별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정보처리자는 이를 활용하기 위해 파일링시스템 내에서 식별성이 있는 정보와 연결된 구조에서 관리하게 된다.

제17조의 ‘잊혀질 권리’란 ① 수집 또는 처리 목적과 관련하여 그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보주체가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동의한 보관기간이 도과한 경우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를 거부한 경우 ④ 개인정보의 처리가 다른 이유로 이 규칙안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관리자에게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더 이상의 배포를 금지할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정보를 타인으로부터 공개되지 않고 잊혀 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정보주체의 권리로 보아 추가하였지만 이의 실현 가능성 문제로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다(김혜진 외, 2013).

제20조에서는 모든 정보주체들은 자신에 관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프로파일링에 관하여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강, 업무능력, 경제 상황, 개인적 선호, 신뢰성, 품행 등 개인의 비식별 정보를 종합하여 식별정보로 분석·예측할 목적인 경우 정보주체는 정보수집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가 요구한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미국

미국은 개인정보처리에 있어 의료정보, 통신정보, 아동정보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허용하고 있어, EU 등 다른 나라에 비하여 빅데이터 활용에 유리한 법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이창범, 2013).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도 Do-not-Track기능,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모바일 프라이버시 보호, 플랫폼 프라이버시 보호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연방거래위원회(FTC : Federal Trade Commission)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

는 추세이다(이창범, 2013).

미국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최근의 움직임 중 하나는 오바마 정부의 ‘온라인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이다(White House, 2012). 동 ‘프레임워크’는 7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 및 사업자단체·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합의를 바탕으로 ① 권리장전의 내용을 구현한 분야별 개별 지침(Code of Conduct), ②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개별 법률의 정비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③ 연방거래위원회(FTC)로의 개인정보보호법 집행권의 통일, ④ 국가 간 정보 흐름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국제적 협력 등 네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창범, 2013). ‘프레임워크’ 내용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소비자에게는 명확한 보호의 기초를, 기업에게는 투자에 대한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은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선택권, 동의·철회권 등을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② 프라이버시 및 보안실무에 대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명성’ ③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할 당시 제공 조건 그대로 사용하는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④ 기술적 조치의 유지 및 관리 등 ‘정보보안’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요구권, 정정요구권의 보장 및 ‘정확성의 원칙’ ⑥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보유에 대한 ‘제한적 정보수집’ ⑦ 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에게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책임’이며 7가지 세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유사한 시기에 FTC는 프라이버시 정책담당자와 사업자들을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로서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Protecting Consumer Privacy in an Era of Rapid Change)라는 권고를 발표하였다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자신의 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더 큰 통제의 여지를 부여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이창범, 2013). 권고 사항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자신의 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더 큰 권한을 주기 위하여 기업들에게 영리적 정보처리 관행에 있어 ‘모범 관행’(Best Practice)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하고 있고, 소비자 선택 및 정보수집 관행의 투명성을 단순화 시켜 입법이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김태오, 2013).

2013년 4월에는 캘리포니아주 Bonnie Lowenthal 의원이 ‘알 권리에 관한 법률(Right to Know Act of 2013) (안)’을 발의 하였는데 소비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이용 상황에 대한 알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동 (안)에 따르면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Disclose)하는 경우, 고객의 열람요청이 있는 때에는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주도록 제시하고 있다.

1) 정보주체의 선택권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 원칙을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먼저 기업들은 개인 정보를 수집, 공유, 공개함에 있어 정보주체에게 이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White House, 2012). 여기서 선택권이란 정보주체 스스로 개인정보의 공개 수준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 또는 방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검색 포털이나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의 경우에는 정보 주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접근 가능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프로파일 생성이 용이하며 수집된 정보 중에는 상당히 민감한 정보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공개 등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선택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요구한다. 정보주체의 선택권에 대한 보장은 정보를 이용하는 제3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 명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정보주체는 스스로 선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닌다고 제시하고 있다. 즉 검색 포털과 같은 정보 중개자나 자신의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였고, 이때 정보처리자가 처리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의 수집을 적법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 수집 행위 보다는 공개된 과정의 적절성과 정보주체와 정보중개자의 책임과 의무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정보주체와 정보 처리자의 합목적성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의 세 번째 내용인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Respect for Context)에서는 소비자가 정보를 제공할 당시의 목적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만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공개할 수 있다고 제한한다. 만약 기업이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개할 경우에는 해당 목적을 공개함과 동시에 정보주체에게 강화된 정보 처리 절차의 투명성과 통제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제시하고 있다(White House, 2012). 예를 들어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의 경우 사용자들은 타인과의 관계 생성이나 유지를 위해 글, 사진, 동영상, 위치 정보 등 다양하고 방대한 개인정보들을 생성하고 저장하게 된다. 즉,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공개의 목적은 타인과의 관계 생성이나 유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소셜네트워크 사이트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목적의 부합성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처리자가 수집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최소한 정보주체에게 고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3) 정보주체의 알 권리

현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서는 디렉트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회사와 개인정보의 유형을 문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최근 제시된 ‘알권리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소비자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 및 공유현황에 대한 알권리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온라인 광고, 데이터 브로커, 제3자 앱 등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용되고 유통되는 전반에 대한 알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이름, 연락 정보, 공개된 개인정보의 유형을 고객에게 무료로 알려주어야 하며, 요청 후 30일 이내에 지난 12개월간에 공개된 정보에 관한 모든 요청 사항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동 법안에서 소비자의 기본 권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조치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계점이 있지만 소비자 즉 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해서 그들의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최인선 외, 2012).

4)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과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에서는 앞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웹사이트 운영자, 휴대전화 사업자, 온라인 광고 사업자 등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온라인 추적차단(Do Not Track) 기능을 구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FTC, 2013). 실제로 이 권고안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에게 온라인 추적차단 기능에 대한 조치 여부를 공개하도록 ‘온라인 프라이버시법’(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을 개정 중에 있다. 온라인 추적차단 기능은 정보주체에게 개인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브라우저 업체, 디지털 광고 연합(Digital Advertising Alliance), 웹 표준 개발 연합(World Wide Web Consortium) 등에서 국제적 표준과 기술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대형의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쿠키나 소셜 위젯 등을 통한 이용자의 온라인 행위 추적은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프라이버시 보호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결국 정

보처리자는 이용내역정보에 수집에 있어서도 정보주체에게 이용내역정보 수집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고 정보주체가 이 기능을 통해 설정한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기준으로 간주한다고 볼 수 있다.

3. 해외 법제의 시사점

빅데이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EU와 미국의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기존의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와 정보처리자의 의무와 역할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활용 절차가 안전하고 정당하다면 부분적으로 수집, 이용, 공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사전 동의(Opt-in)과 사후 제외(Opt-out)를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EU 규칙의 특징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① 기존의 ‘지침’에서 ‘규정’으로 법 형식을 변경하여 규제의 구속력 강화, ② 정보주체의 권리 확대, ③ 정보처리자의 의무 강화이다. EU는 새로운 정보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개념을 확장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처리 원칙의 투명성을 강조하였다. 정보주체의 권리 다양화의 일환으로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정보 접근권, 정정권, ‘잊혀질 권리’와 삭제권, 정보 이동권, 거부권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행정 절차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대신에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동의의 입증, 상세 현황 고지, 피해 사실 통보 등 여러 의무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EU와 유사하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주체의 선택권 보장을 통한 정보주체의 권리 확대 및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불법적 정보 수집 및 유통

행위가 검색 포털이나 광고 업체 등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과 관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추적차단 기능을 구비하도록 권고함으로서 정보주체의 정보공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징적으로 정보주체의 의무 또한 강조하고 있는데, 정보주체 스스로가 정보공개의 범위를 선택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보주체의 노력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요컨대 선진 국가들은 빅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 정보처리자의 편의를 고려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체계는 오히려 강화하고 정보처리자의 책임은 확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정보처리자의 투명한 개인정보 관리를 통해 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빅데이터 관련 산업 발전 간의 균형점을 찾아나가고 있는 것이라하겠다(김일환, 2011).

IV.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의 개선방향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기업들의 비용부담과 산업 발전을 이유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과는 엄연히 분리되어야 한다. 더욱이 '가이드라인(안)' 상의 기존 법체계를 훼손하는 내용들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규제포획(Capture Theory)의 결과물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또 하나의 계류 법안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들의 최근 법제 동향을 살펴보면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개념과 처리원칙의 강화, 정보주체의 권한과 정보처리자의 책임 확대 등과 함께 산업지원을 위한 정보처리자의 행정적 편의를 완화시켜주는 균형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안)'은 산업 발전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고려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진다. 가장 큰 문제는 기존 법률

체계와 관련 관련법들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의 활용이 기업들에게 새로운 경쟁력이 되는 만큼 이의 활용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부과되어야 함에도,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기존 규제부터 일단 완화하자는 대응은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크다. 이에 선진국들의 법제 현황과 기존 우리나라의 법률체계를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안)'이 균형점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공개된 개인정보의 법적 재정의

현 '가이드라인(안)'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및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 제한 없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로서 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이후의 조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정의의 가장 큰 모순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의 과정을 생략하고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개된 개인정보'의 정의가 모호하여, 어떤 목적으로든지 제한 없이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 또한 존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범위를 고려한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재정의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방안으로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의함에 있어 목적대상을 '제한 없이'에서 '공개 목적'으로 한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트위터의 경우에는 제한설정 없이 공개한 게시글에 대해서는 공개된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 트위터 게시글의 특성상 개인적인 방송에 준하며 신문사나 언론과의 인터뷰, 신

문의 기고한 글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개 목적’의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에는 ‘공개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수집·이용·제공이 가능하다. 하지만 폐쇄형 SNS(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와 같은 특정한 집단에게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도록 비공개 처리한 경우나 정보주체가 정보의 활용 불가 의사를 게시글 또는 다른 수단으로 표명했다면 검색 및 수집이 가능하더라도 이를 공개된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렵다. 이 경우에는 ‘공개 목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집·이용·제공이 불가능하다.

또한, 공개된 개인 정보의 활용 범위에 있어서도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와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정보처리자가 이를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Opt-out 방식을 통해 사후 동의를 득하는 것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되지 않는다. 수집·분석을 통하여 발생한 ‘수집 또는 파생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여전히 개인정보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이용내역정보의 목적 외 사용 고지 및 동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일관되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를 요구한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①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

이드라인(안)’ 제4조에서는 “이용내역정보는 정보주체의 거부의사가 있지 않을 경우 서비스 계약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이용내역 정보를 수집하여 조합, 분석 또는 처리하는 경우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대량의 정보주체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득하는 것이 다소 어렵기 때문에 정보처리자의 부담을 완화해주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조항이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거부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특별한 규정으로서 예외적 허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용내역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처리자 즉 사업자가 정보주체에 대한 연락 가능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파생된 개인정보나 다른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용내역정보에 관해서는 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해당 시스템의 구동 목적만으로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고지 및 동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3. 개인정보 생성의 목적 관련성 및 내용의 고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생성 또한 개인정보의 처리로 정의하고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안)’ 제5조 제1항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 및 이용내역정보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개인정보를 생성하는 경우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다. 이의 보완을 위해 생성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용내역정보의 경우에는 비교적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

의를 득할 수 있음에도 거부권만 인정하는 것은 문제 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및 외국의 관련 법률에서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있어 ‘목적 관련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 반해 제5조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생성된 개인정보의 성격이나 식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제2항에서처럼 ‘개인정보의 생성 사실 및 목적 고지’ 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시 항목, 보유, 이용 기간을 알리도록 되어 있는데 새로운 개인정보의 생성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행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안)’ 제5조의 경우에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통신 사업자가 새로운 개인정보 생성이 가능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새로운 개인정보 생성 목적이 정보통신 사업자 자신의 서비스 제공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생성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생성된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나 생성된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기 뚜렷하게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4.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범위의 구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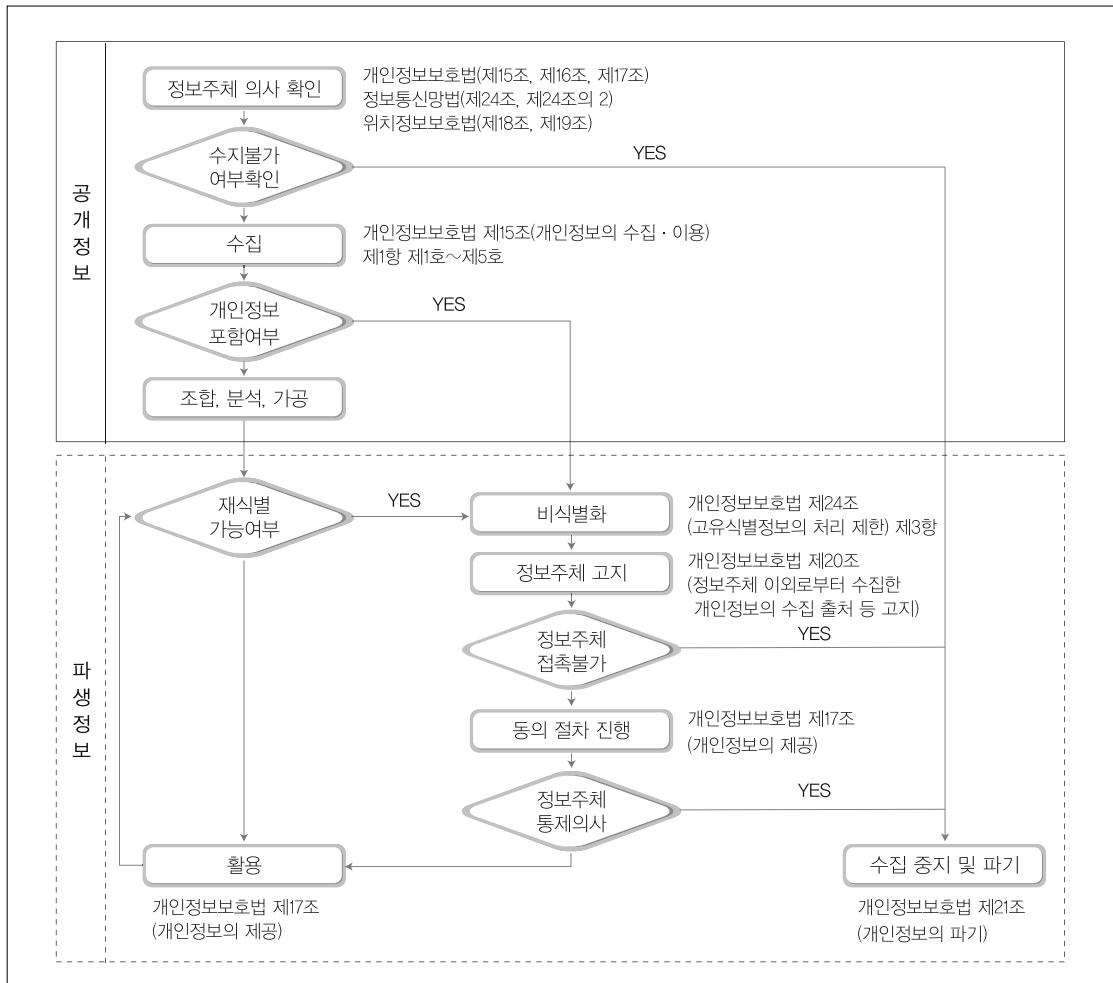
빅데이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처리자가 다양한 정보의 조합 및 분석을 통해 식별 가능성이 존재하는 새로운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이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위험성이 높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관한 규정으로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

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동법 제36조 제2항에서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없는 경우 자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률에 규정된 거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자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현행법 기준에서는 공개된 개인정보, 이용내역정보, 생성된 개인정보는 모두 개인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범위 내에 있다. 정보주체에게 통제권이 보장 될 때 개인정보보호 침해 피해에 대한 구제와 권리 회복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 ‘가이드라인(안)’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관한 언급이 없고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제를 무력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 받기 어렵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안)’ 내에서 접근권, 프로파일링 거부권, 삭제권 등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 추가될 필요성이 있다.

5. 합리적인 빅데이터 처리 프로세스의 정립

‘가이드라인(안)’은 정보주체의 통제 권리를 강화하고 예외 범위를 명문화하겠다는 방향으로 현재 수정 중에 있다(머니투데이, 2014/04/21). 그러나 이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기업들에게 정보 활용 범위의 축소는 가용한 정보자원 감소라는 측면에서 빅데이터 관련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반대로 공개된 개인정보만을 대상으로 하더라고 조합 및 분석 과정을 통해 여전히



〈그림 1〉 합리적인 개인정보 처리 프로세스(안)

사생활 침해소지 가능성이 높아, 시민단체들은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산업의 육성 사이에서 배치하고 있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안)’을 수정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빅데이터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적법성에 기반한 합리적 개인정보처리 절차가 요구된다. 이를 위한 핵심 원칙은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 있어 위법성은 최소화되어야 하고 정보주체의 권리와 정보처리자의

의무는 극대화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정보처리자는 수집, 조합, 분석, 가공 과정상에서 필요한 모든 법적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러한 노력이 전제가 될 때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제정방향이다.

이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구체화하고 현 ‘가이드라인(안)’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과 연계한 ‘가이드라인(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림 1〉을 통하여 합리적인 개인정보 처리 프로세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보다 정교한 ‘가이드라

인(안)'의 수립이 요구된다.

V. 결론

정보주체의 보호와 산업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더욱이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IT의 발전과, 스마트기기의 보급, SNS의 활용 등을 통하여 수많은 정보들이 생성되었으나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이환수 외, 2013). 빅데이터 관련 기술의 등장으로 디지털화 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 유출 여부를 인식하기조차 어려워졌으며,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다시 제2, 제3의 피해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위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균형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안전행정부, 국정원 등 관련 정부 기관과 법률 전문가, 산업체, 학계,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가이드라인(안)'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안)'은 현재 계류중이고 이와 관련하여 학술적 논의가 전무한 관계로 정형화된 연구방법론에 따라 실증적 접근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현재 '가이드라인(안)'이 가지고 있는 법리적 쟁점과 해외의 법제 동향을 정리 및 분석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학술적·실무적 의의가 있다. '가이드라인(안)'이 적법하면서도 대중에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빅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정당성은 결국 기준 법체계와의 연계성 검토를 통해 보완 가능하고, 합리성의 핵심은 정보처리자에게 안전한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와 노력 을 요구할 때 달성 가능하다. 현재의 '가이드라인(안)'은 본질적으로 지나치게 산업 중심적 성격을 내

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서 제시한 개선 방향에 대한 고려와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안)'의 제정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문헌

- 고은별·최광희·이재일 (2012). "EU와 한국에 구현된 '잊혀질 권리'의 차이." 「정보과학회지」, 30(10): 34-41.
- 길준규 (2012). "통합개인정보보호법과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 「토지공법연구」, 57: 213-234.
- 김승한 (2013).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4(1): 107-145.
- 김일환 (2011).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법제의 분석을 위한 헌법상 고찰." 「헌법학연구」, 17(2): 354-389.
- 김재광 (2012).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새로운 법적 문제." 「강원법학」, 36: 95-120.
- 김태오 (2013). "정보유통과 프라이버시의 균형 : 미국의 관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경제규제와 법」, 6(1): 34-56.
- 김혜진·강달천 (2013). "잊혀질 권리의 효율적인 발전방향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 문재완 (2014).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42(3): 53-77.
- 문혜정·조현석 (2012). "빅 데이터 시대 위험기반의 정책 : 개인정보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19(4): 63-82.
- 박대하·백태석 (2011). "클라우드 컴퓨팅 개인정보보호 연구동향과 과제."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1(5): 37-44.
- 성준호 (2013).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검토." 「법학연구」, 21(2): 307-333.
- 신덕호 (2009).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발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창원·황승구 (2012). "빅데이터 기술과 주요이슈." 「정

- 보과학회지』, 30(6): 10–17.
- 유근환·유창호 (2013). “지적정보 빅 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5(2): 31–51.
- 이규철 (2013). “新기술(빅데이터) 등장과 개인정보의 보호.” 「과학기술법 연구」, 19(1): 3–36.
- 이창범 (2013). “개인정보보호법제 관점에서 본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방안.” 「단국법학」, 37(1): 509–559.
- 이창범 (2013). “유럽연합의 빅데이터 관련 법제동향 및 시사점.” 「외국법제정보」, 2013–6, 한국법제연구원.
- 이창범 (2012). 「개인정보 보호법」. 서울: 법문사.
- 이환수·임동원·조항정 (2013).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보고이용이 사용자 저항에 미치는 영향.” 「지능정보 연구」, 19(1): 125–139.
- 정준현 (2014).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위한 법적 문제와 개선방향.”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38(1): 125–154.
- 정찬모·이창범 (2009).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이용 시 정보주체의 동의원칙.” 「정보화정책」, 16(4): 113–126.
- 최규현 (2012). “빅데이터 연구 동향과 시사점.”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 최인선·채은선 (2012). “개인정보보호 해외 법제 동향.” 한국정보화진흥원.
- 히라이 아키오·オカヤス 유이치 (2013). 「데이터가 보인다」. 비제이퍼블릭.
- 함인선 (2012). “EU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133: 5–38.
- European Commission (2012). “Why do we need an EU data protection reform”, http://ec.europa.eu/justice/data-protection/document/review2012/factsheets/1_en.pdf.
- Manyika, J., Chui, M., Brown, B., Bughin, J., Dobbs, R., Roxburgh, C., & Byers, A. H. (2012). “Big Data: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McKinsey Global Institute.
- White House (2012). “Consumer data privacy in a networked world : A framework for protecting privacy and promoting innovation in the global digital economy,” White House, Washington, DC.